

투자심의위원회 규정

제정 2021.03.19.

개정 2022.2.8.

제1조 [목적]

본 규정은 (주)한샘(이하 "회사"라고 한다.)의 이사회 운영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된 투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기준]

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3조 [구성]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.
-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
- ⑥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되거나 사외이사인 위원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 [심의]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- ① 200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[3]% 이상, 5% 미만 투자에 관한 사항

- ②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경영상 중요 투자 항목

제5조 [회의]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할 수 있고, 분기 마감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이 의안과 사유를 밝혀 요청을 한 경우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 이후 처음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 및 결의 내용 결과를 보고한다.
- ⑥ 위원회는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 [의사록]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[관계인의 출석 등]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경영전략 및 기획 관련 담당 임원,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칙(2021. 3. 19. 시행)

제1조 [시행일]

본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년 2월 8일 시행)

제1조 [시행일]

본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